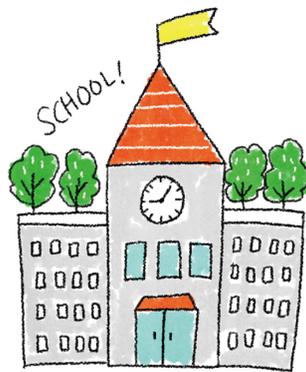


2021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일러두기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정 등으로 인한 적용 시점에 따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각 학교급별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의 수록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우선하지 않으며, 해당 질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확대·적용 또는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로서의 활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은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탑재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는 학교급을 의미합니다.

2021학년도 질의·회신 사례이므로 해당 질의의 근거로만 이해하시고, 2022학년도에는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근거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5-37쪽, 중 36-38쪽)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4쪽, 중 45쪽)

활용하기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자료실]-[참고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 받아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집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색인을 수록(색인 페이지 적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로 질의하시기 전 질의 내용에 따른 문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나이스 지원센터: 시스템 처리 방법, 학생부 검증 오류 등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포털 우측 상단의 나이스지원([나이스광장]-[사용자 지원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나이스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학생평가 지원센터(043-931-0650): 학생평가 관련 사항 등
 - 학생평가 지원포털(<https://stas.moe.go.kr>)을 통해 학생평가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소속 시·도교육(지원)청: 시·도별 봉사활동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누가기록 입력 방법, 학적 세부사항 등
- 관련 법령 및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교육부]-[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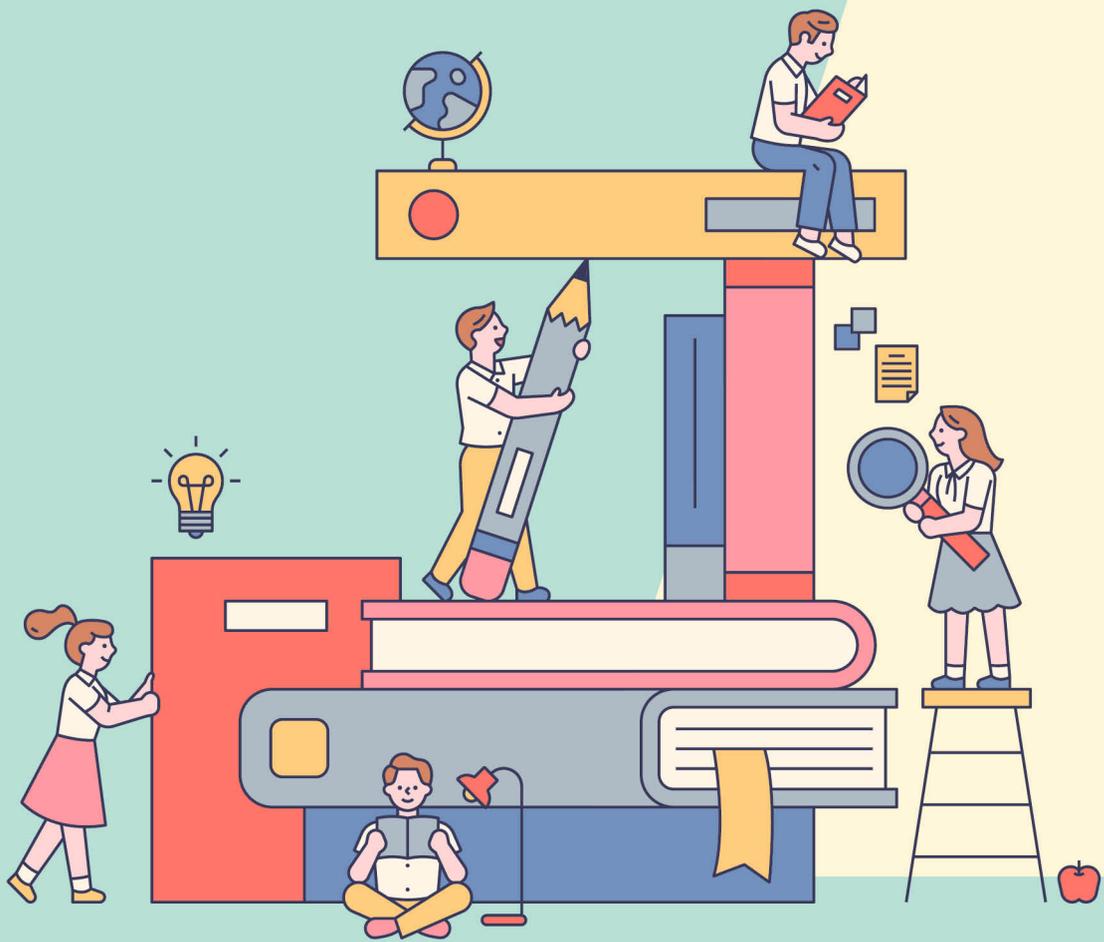


2021

학교생활기록부 질의·회신사례집

Contents

01 ... 인적·학적사항(공통)	06
02 ...출결상황(공통)	15
03 ...수상경력(중·고)	21
04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25
05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29
06 ...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58
07 ...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71
08 ... 독서활동상황(중·고)	74
09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공통)	78
10 ... 정정사항(공통)	81
11 ... 기타사항 등(공통)	91





인적학적사항(공통)



Q1

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으로 인해 자녀가 의무 교육 면제 대상이 될 경우

- 1) 귀국 전 면제 신청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 현지 외국 학교에 재학하다가 추후 귀국할 때 국내 원적교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3) 국내 재취학 시 학년 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1

출국 전 의무교육면제 신청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해외체류의 목적, 실제 체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시도교육청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국 시 국내학교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2) 성적증명서
-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4) 출입국사실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합니다. 이 때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또한,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4쪽, 중 45~46쪽, 고42~43쪽)

6)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같음함 (관련 문의: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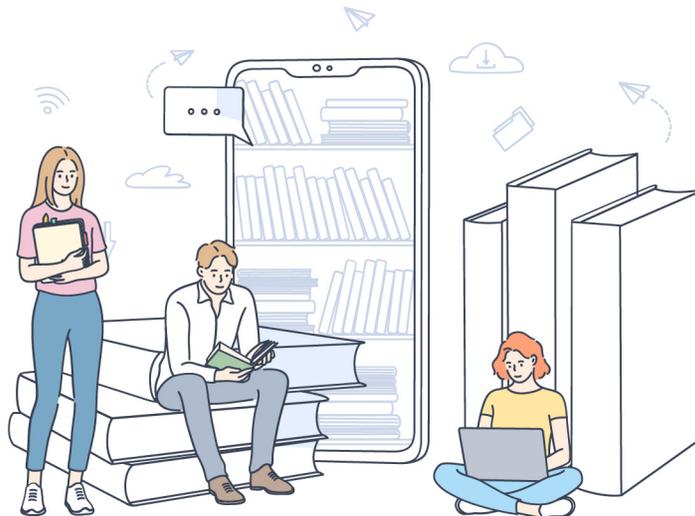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인적학적사항(공통)



Q2

6학년(또는 다른 학년)에서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미인정 유학 등)으로 정원의학적 관리되던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루지 않고 중학교 1학년(또는 2~3학년)에 재취학(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

중학교 입학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정원의관리 중인 학생이 중학교로 재취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초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중학교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제43조(입학자격 등)

-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790호)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3

사례1

담임교사가 1주일 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1주일 담임을 맡아주신 기간제교사도 담임 이력에 입력하나요?

사례2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급담임교사 A교사→B교사→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 B, A교사 모두 입력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회 교사나 교과전담 교사가 배정된 경우에도 담임으로 입력하나요?

A3

학교장이 임명하여 학급담임으로 역할을 수행한 모든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이력에 기재합니다. 이때 채용형태, 담임업무 수행기간은 기재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담임교사가 변경된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B교사-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해야 함)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9쪽, 중 126, 고 136쪽)

③ 학급담임교사 이력

가.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입력하되, 줄이 바뀌어 표시되도록 한다.

【기재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과정] [담임편성 관리 담임교사편성에서 '학생부반영'과 '이력추가'를 선택한 후 등록함.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A교사 모두 입력함.



인적학적사항(공통)



Q4

학기 중에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A4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년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 관찰, 평가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은 ‘(해당 사유)로 인해 활동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하고, ‘중학교 자유학기과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사유)로 인해 특기사항 없음’을 입력해야하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해당 사유)로 관찰한 내용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30쪽)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0쪽)

마. 기타

2)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의 전출, 면제, 유예 학생 등의 수시·상시 기록한 평가 결과는 학생의 재취학 및 전입학을 위하여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0~91쪽, 고 116쪽)

마. 기타

4)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평가 결과,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사항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5

불법체류 자녀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증빙자료가 없어서 기재요령에 따라 7000000 으로 입력했더니 학교생활기록부 검증에서 오류 항목으로 계속 뜹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5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8쪽, 중 39쪽, 고 37쪽)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검증 항목(주민등록번호 검증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검증항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명	검사방법	비고
재학정보	학년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년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년이력의 학과정보가 없습니다.	학년이력의 학과정보가 없습니다.	
	학년이력의 반정보가 없습니다.	학년이력의 반정보가 없습니다.	
	학년이력의 번호가 없습니다.	학년이력의 번호가 없습니다.	
	학년이력의 학과정보가 학적 자료와 다릅니다.	학년이력의 학과정보가 학적 자료와 다릅니다.	
	학년이력의 반정보가 학적 자료와 다릅니다.	학년이력의 반정보가 학적 자료와 다릅니다.	
인적사항	학년이력의 번호가 학적 자료와 다릅니다.	학년이력의 번호가 학적 자료와 다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7번째 자리가 1 또는 2, 3, 4가 아닙니다.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7번째 자리가 1 또는 2, 3, 4가 아닙니다.	
	등록된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등록된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번호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학생 사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 사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성별이 없거나, 주민번호의 성별구분자와 맞지 않습니다.	성별이 없거나, 주민번호의 성별구분자와 맞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없거나, 날짜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학적-기본신상]	생년월일이 없거나, 날짜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학적-기본신상]	
	누가주소가 없습니다.	누가주소가 없습니다.	



인적학적사항(공통)



Q6

외국인 신입생의 성명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고, 학부모는 한글로 학생의 성명을 표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해야 할지, 아니면 학적에서 수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6

신입생의 경우 학생 본인의 성명을 포함한 학생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 [학적]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표기방식 변경을 포함한 개명만'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해야 함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이때의 증빙자료로 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8쪽, 중 39쪽, 고 37쪽)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 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9쪽, 중 39쪽, 고 37쪽)

가. 학생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신입생은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1쪽, 고 142쪽)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7

2월 15일에 종업식(졸업식)을 하는 A초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2월 1일에 B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려 하는데 B초등학교는 이미 1월 13일에 종업식 및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출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7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전출교에서는 해당학생을 전출처리 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입학 처리를 합니다. 전입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 상에서 졸업 및 진급처리를 해 이미 학적반영이 완료되었을 경우, [학적]-[전입관리]-[진급누락자관리]메뉴를 통해 전입생에 대해서 상급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학적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5쪽, 중 36쪽, 고 35쪽)

(초·중)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고)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1쪽, 중 42쪽, 고 40쪽)

나.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기재 방법】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해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인적학적사항(공통)



Q8

학적 사항에 중학교 졸업 사실이 누락, 대안학교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

A8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졸업 내용 없이 검정고시 합격 내용만 입력합니다. 담임교사가 검정고시 합격증명자료(관련공문, 합격증명서 등)를 확인하여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학적사항탭에서 합격연월일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0쪽)

〈예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학적사항 2020년 06월 16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202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47쪽)

〈예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학적사항 2020년 06월 16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2021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출결상황(공통)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9

사례1

조부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사망 전날 결석도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한가요?

사례2

학생이 학교 활동 중 가족의 사망이 발생하여 조퇴를 한다면 그 날은 포함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일까요? 또한 사망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A9

사례1: 가능합니다. 사망일을 포함하여 전후 연속하여 5일 이내라면 출석인정처리 가능합니다.

사례2: 해당일을 포함하여 5일을 산정할 수도 있고 학생의 사정(원거리 등)에 의해 다음날부터 5일 산정도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8~59쪽, 중 60~61쪽, 고 57~58쪽)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나. 결석

9)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출결상황(공통)



Q10

다음은 5회 이상의 단기결석의 경우 주된 사유를 기재하기로 결정한 학교의 사례입니다.

사례1

질병으로 하루를 결석했을 경우 보통(1일)로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단기결석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에 해당되는 기준횟수를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례3

단기결석을 2일씩 3번 했을 경우 3회인가요? 6회인가요?

A10

사례1: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사항이 맞습니다.

사례3: 6회입니다. 출결상황란에서 결석의 경우는 일수가 곧 횟수이며 ‘연속된’ 결석 횟수인지 여부는 장기결석 판단 시에만 필요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3쪽, 중 65~66쪽, 고 62~63쪽)

③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5쪽, 중 97쪽, 고 100쪽)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11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정한 후, 해당 질병명을 출결 특기사항에 '질병(10일)'과 같이 통칭하여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1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질병명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둡니다. 기재요령에도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명을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유 자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3쪽, 중 65~66쪽, 고 62~63쪽)

제8조(출결상황)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예시〉 결석과 조퇴가 있는 경우

학년	수업일 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2						1			1			
		15			1									다리수술(10일), 감기(5일)
			27	3		10			2					학교생활부적응(27일), 모간병(3일) 생활부적응지각(10회)
		10			12									감기로 인한 질병결석(10일),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2회)
		1	1		2					13				두통치료조퇴(13회)
														개근



출결상황(공통)



Q12

다음은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이 5일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1

한 학생이 질병 3일, 미인정 2일, 기타 5일을 연속해서 결석했는데, 이 경우 사유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감기 3일, 복통 2일로 연속해서 5일을 결석한 경우도 장기결석으로 판단하나요?

A12

사례1: 기타결석 2일에 대한 사유만 기재합니다.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사유를 기재하고, 질병과 미인정 결석은 각각 5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2: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감기와 복통의 경우 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합산하였을 때, 5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3쪽, 중 65~66쪽, 고 62~63쪽)

③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13

사례1

전출교와 전입교의 학사일정 차이로 다른 학생들과 달리 수업일수가 190일에 미달할 경우 출결 특기사항의 기재 사항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례2

전출교에서 출석일수가 180일로 개근인 학생이 본교의 학사일정이 끝난 후 전입을 와서 전입교의 수업일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개근 입력이 가능한가요?

A13

사례1: 학적을 통해 전출입사항이 확인되므로 출결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수료 기준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산정은 190일 미만의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학생이 출석한 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됩니다.

사례2: '개근'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최종 출결상황란에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이므로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개근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3쪽, 고 50쪽)

※ 전입학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4쪽, 중 67쪽)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2)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취학(상위학년으로 중도 재취학 제외)의 경우는 재취학 이전과 재취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3쪽)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2)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함.



출결상황(공통)



Q14

출결특기사항에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할 때 전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원격수업일수와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는지 최종 합산하여 한 번만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4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전출교는 전출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를, 전입교는 전입일 이후의 원격수업일수를 각각 따로 기재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학년도 2학기 이후)(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7451, 2021.11.18.)**
 - (전출입)원적교(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
 - ※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까지)’(전출교에서 입력)
 -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전입교에서 입력)
 - ※ 학생 전출시,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



수상경력(중·고)



Q15

교내상으로 공로상, 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등 시상 시, 교외상 실적을 바탕으로 상을 시상하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나? 교외상이 교내상의 수여 근거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A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교외상 실적 등을 근거로 한 경우 교내상 일지라도 수상경력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 라.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1쪽, 고 68쪽)

- 제9조(수상경력)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 나.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상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6쪽, 고 73쪽)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수상경력(중·고)



Q16

금상-은상-동상으로 시상 시, 금상이 복수(2명)인 경우 은상은 몇 위로 표시해야 하는가요?

A16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이며, 학생 개별 등위가 아니므로 은상(2위)로 표기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3쪽, 고 70쪽)

2 등급(위)

가.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최우수상(1위)이 없는 경우는 우수상(1위)으로 입력함.

나. '등급(위)'란에 상의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되, 상장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상의 종류가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으로 입력함.

○ 상의 종류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동상(4위)'으로 입력함.

※ 대회 수상실적인 경우만 '등급(위)'을 입력하되, 등위만 있는 경우 등급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17

대회를 진행 후, 등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원의 20% 이내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등급(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A17

등급에 대한 시상계획이 없다면 '등급(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3쪽, 고 70쪽)

② 등급(위)

가.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최우수상(1위)이 없는 경우는 우수상(1위)으로 입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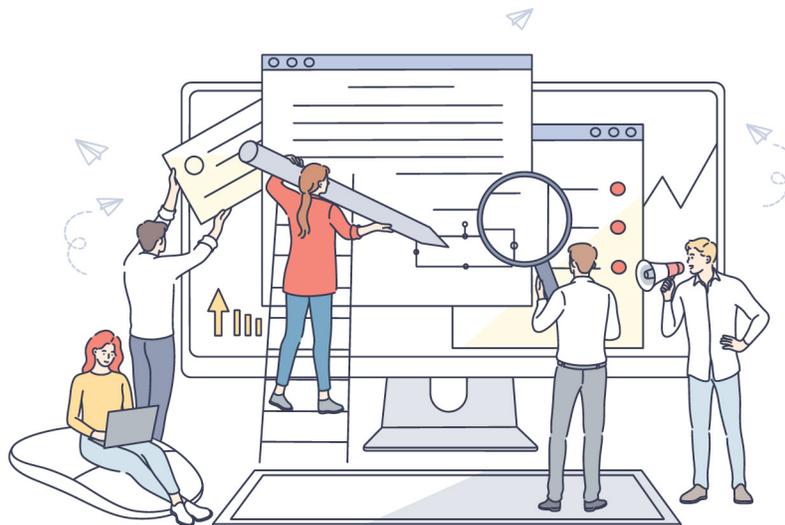
나. '등급(위)'란에 상의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되, 상장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상의 종류가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으로 입력함.

○ 상의 종류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동상(4위)'으로 입력함.

※ 대회 수상실적인 경우만 '등급(위)'을 입력하되, 등위만 있는 경우 등급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수상경력(중·고)



Q18

학생이 전출하고 난 뒤 시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출 간 학생의 수상경력은 어떻게 입력해줘야 하나요?

A18

전출교에서 자료를 공문으로 전송하고, 전입교에서 이를 근거로 [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고 30쪽)

차. 전출입 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2) 위 '1)' 의 각종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전출(입) 요청 공문' 혹은 '전입(출)승인 공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 전송 가능함.
- 3) 위 '1)'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당해학년도의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전출교) 작성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료 입력 관련 공문'을 전입교로 전송함.
 - 나) (전입교) 소속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위 '가)'항의 '자료 입력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관리함.

【기재 방법】

- 교과우수상 대상자나 사정회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19

위탁기관의 자료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자격증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A19

입력 불가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란 외에는 어떠한 항목에도 취득한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서 보내 온 자료라 할지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8쪽, 중 70쪽, 고 67쪽)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9쪽)

유의사항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 참조).
-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Q20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중 이전 학년도 자료에 자격증 준비과정, 취득 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 학년도에 기재된 자격증 관련 내용을 정정해야 하나요?

A20

2011학년도 이후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사실을 서술형 항목에 입력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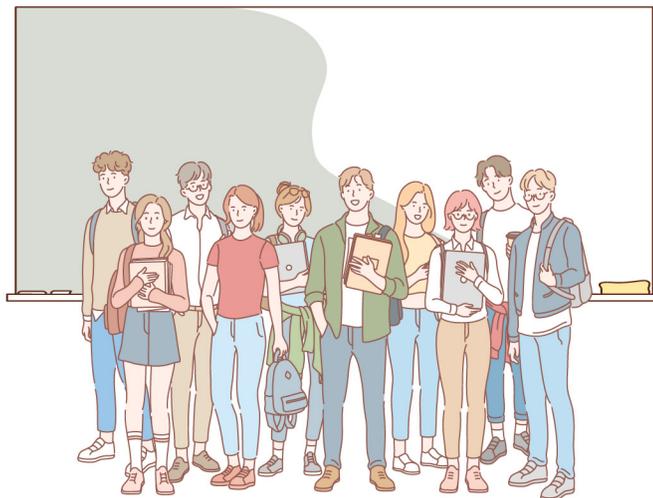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9쪽)

유의사항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 참조)
-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21

사례1

자격증은 정정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정정 가능한가요?

사례2

이전학년도 누락된 자격증은 정정대장 작성 없이 누가기록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전학년도 기재된 자격증에 오류 사항이 있을 때도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누가기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A21

이전학년도 이미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변경(수정, 삭제)은 정정절차에 따라 합니다. 다만 하지만 이전학년도 취득하였으나 누락된 자격증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정 대장 작성 없이 누가기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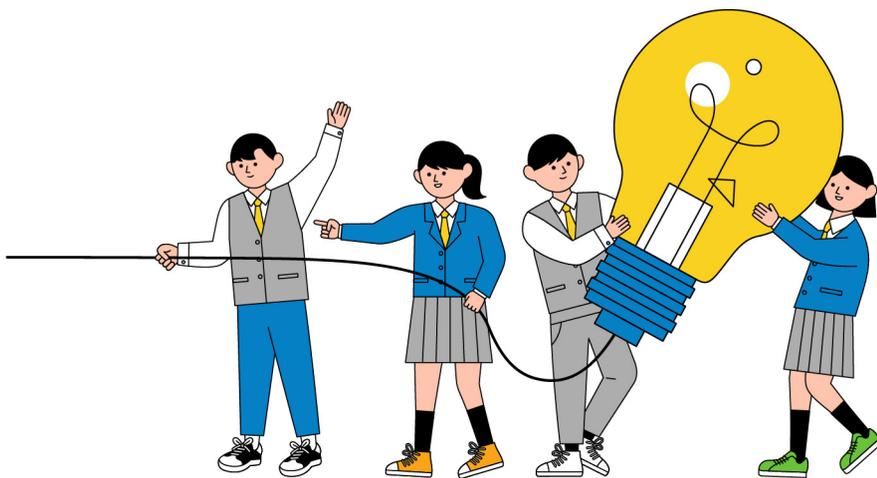
참고 or 관련 근거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9쪽)



유의사항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Q22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 기재 가능한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2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큐넷(<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2(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를 참고하여 소관 부처로 직접 문의하실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5~76쪽)

① 명칭 또는 종류

- 가.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 연도를 확인하고 공인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 ※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과 국제공인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 참조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ld=>
 - 국가전문자격증 참조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2&gSite=Q&gld=>
 - ※ 동일 명칭 또는 종류의 자격증이더라도 등급이 다른 경우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함.
 -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자격증코드관리]에서 {추가}로 등록 시 자격증을 {조회}하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모두 검색되므로 반드시 기술 관련 자격증([참고자료 2] 참조)인지 확인 후 등록해야 함.
 - ※ 자격증 증빙자료로 자격증 원본이나 자격증 취득확인서가 있으며, 자격증 입력 시 사본을 별도로 보관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9쪽)

유의사항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 참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23

사례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급별로 구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 '학교'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점심시간 급식실 도우미 활동이나 방과후 도서관 사서 도우미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 영역의 주관 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3

학교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로 헌혈차가 와서 단체로 헌혈을 진행한 경우,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학교와 개인의 구분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A23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하므로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79쪽, 중 87~89쪽, 고 89~91쪽)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이 아닌 청소년 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3)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24

사례1

교과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닌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활동 내용을 어느 영역에 기재해야 하나요?

사례2

자율활동 시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활동(관련 진로 교육 활동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해당 교육 활동을 기재해야 하는지? 진로가 해당 교육 활동과 밀접한 학생만 자율활동이 아닌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24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하므로 해당 활동을 편성한 영역에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1쪽,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25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은 학생부에 입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명을 봉사활동실적, 장소 또는 주관기관 명으로 입력할 수 있나요?

A25

입력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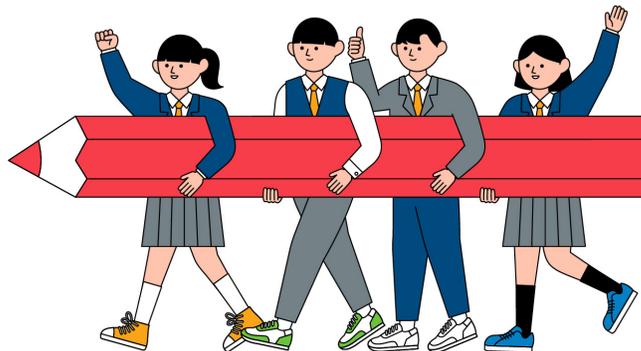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26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중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내용이 'OO외국인센터 안내도우미'라고 주관 기관명을 포함하여 기재가 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입력된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이 포함된 활동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사례2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 전송된 봉사활동 내용에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송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A26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봉사활동 내용에 기관명 등 기재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고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다.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7쪽, 고 89~90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3) '활동 내용' 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27

사례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방학에 '실생활에 수학 적용하기' 등 활동 위주의 수학체험캠프를 진행했는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 중 어디에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2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또는 진로)으로 방과후 체험프로그램을 1~2학년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주1회 2시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계획으로 승인된 내용이면 정규교육활동 시간 외에 진행된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나요?

A27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하므로 정규교과수업이 아닌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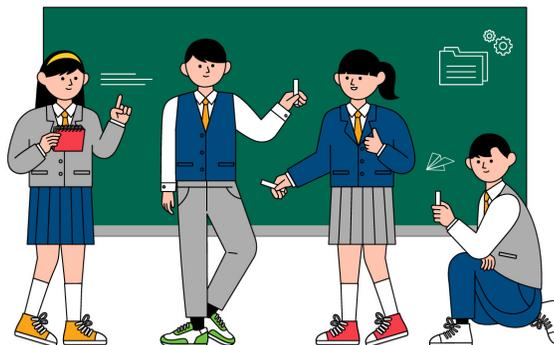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고 83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28

사례1

본교는 학생회장 임기가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인데 학생회장 임원 입력을 2학년 담임이 해야 하는지, 3학년 담임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임원을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데 1, 2학기 모두 임원을 한 경우 활동기간을 1년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사례3

1~5학년 자치활동 관련 임원의 재임기간을 학기 단위로 입력 시 1학기 종료일은 방학 마지막 날짜를 입력하고, 2학기 종료일은 종업식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A28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2학년 2학기 및 3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합니다.

사례2: 임원을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원칙적으로 학기 시작일(1학년 1학기는 입학일)부터 학기 종료일(초 6학년 및 중·고 3학년 2학기는 졸업일)까지 학기 단위로 입력합니다.

사례3: 1학기 종료일이 방학 마지막 날일 경우 방학 마지막 날로, 2학기 종료일은 2월 말일(초 6학년 및 중·고 3학년 2학기는 졸업일)로 입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74쪽)

③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2~83쪽, 고 86쪽)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29

사례1

1학기 초 재취학 학생이 임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원 재임 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취학 일자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학생자치회 임원인 학생이 전출을 가서 임기 도중 그만두고 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A29

재취학 학생의 재임기간은 재취학 학적 반영일부터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전출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하며, 재선출된 신임 임원의 경우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재선출일을 시작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74쪽)

③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3쪽, 고 86쪽)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30

진로활동 희망분야란에 진로희망을 2개 이상 입력해도 되나요?

A30

진로희망 개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의 진로희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6쪽, 고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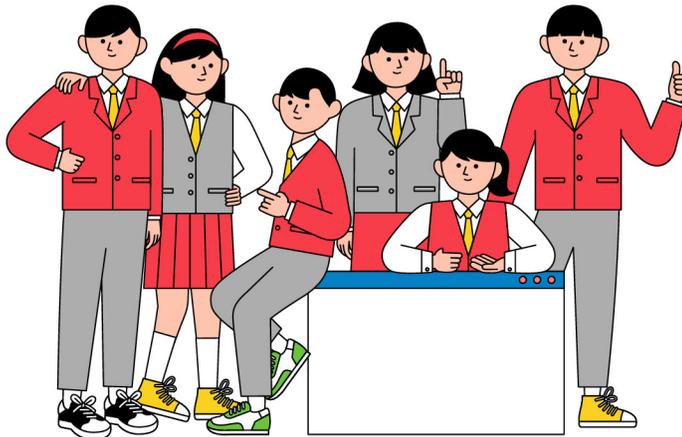
⑥ 진로활동

가.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 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31

학생이 23일과 27일 양일간 2시간 30분씩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에 시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A31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일과 27일에 진행한 봉사활동이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면 봉사활동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해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3일과 27일 각각 30분을 절사하여 2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7쪽, 고 89~90쪽)

⑦ 봉사활동 실적

라.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32

공무원, 경찰,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직업명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희망분야에 기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생명공학, 의학 분야처럼 기재해야 하나요?

A32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는 희망분야 또는 희망 직업을 입력하므로 희망 분야도 가능하고, 구체적인 직업도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6쪽, 고 89쪽)

⑥ 진로활동

가.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33

사례1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2

기저질환으로 한 번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례3

학기 초 위탁학생으로 등록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에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검증 시 오류 사유에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 없음”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A33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를 한 학생은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시 위탁기관에서 제공한 학생자료를 근거로 입력하되, 이수시간(실제 학생이 참여한 시간)이 0시간인 경우는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쪽, 중 82쪽, 고 85쪽)

③ 특기사항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34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 멘토링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멘토링 활동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이수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특기사항에는 기재할 수 있나요?

A3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으므로 학생 멘토링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은 기재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8쪽, 중 88쪽, 고 90쪽)

⑦ 봉사활동 실적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1쪽,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3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각 영역의 서술형 항목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시 학생활동에 대한 날짜 입력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 영역에 입력하는 내용 중 '민주시민교육 (2021.00.00.)을 통해~'와 같이 날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3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입력 시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날짜를 입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활동에 한하여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재임기간을 ()안에 병기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74쪽, 중 82~83쪽, 고 85~86쪽)

③ 특기사항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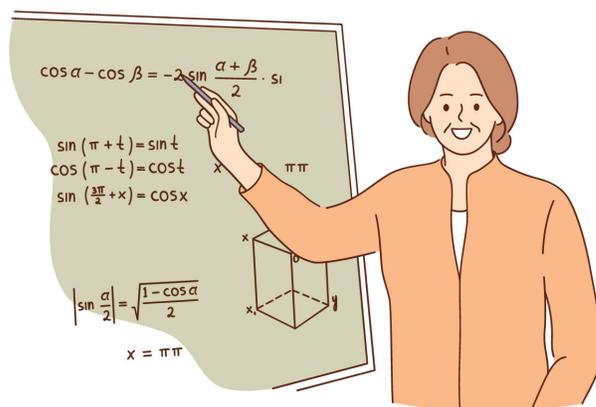
<예시> 월 1회, 6회, 2021.03.02.-2021.07.08./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재임기간 등

④ 자율활동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안에 병기한다.

<예시> 1학년: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1.03.02.-2021.08.16.)

<예시> 3학년: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2021.03.01.-2022.02.10.)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36

사례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각 영역별 특기사항을 기재할 때, 누가기록에 있는 내용만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방과 후에 시상 계획이 없는 교내 독서토론회를 실시한 하였는데, 이런 경우 자율활동에 입력해도 되나요?

A36

누가기록에 없는 활동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을 이수 시간과 함께 누가 기록하므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운영하여 이수시간이 등록되지 않아 누가기록이 없더라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등 입력 조건에 맞는 활동은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82쪽, 고 83~85쪽)

(초) 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고) ②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Q37

OO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온라인 행사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여 진행한 학생활동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나요?

A37

OO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정보원 모두 교육관련기관 또는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에 포함된다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5]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은 소속 시도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0쪽, 고 83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타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중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군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자료 5]를 참조함.
 -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38

학기 초 동아리활동 중 부득이하게 학생이 동아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 동아리활동이라 활동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38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4쪽, 중 83쪽, 고 86쪽)

㉠ 동아리활동

가.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39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내 급식도우미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기간을 학년도 단위(3월 1일~2월 28일)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교내 급식도우미 활동기간은 3학년 졸업식(2월 초)까지입니다. 봉사활동 기간을 입력할 때 실제 활동 기간을 입력해야 하는지, 계획에 따라 2월 28일까지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9

실제 기간을 입력합니다.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할 때에는 계획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실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하므로 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활동 기간 및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실적 입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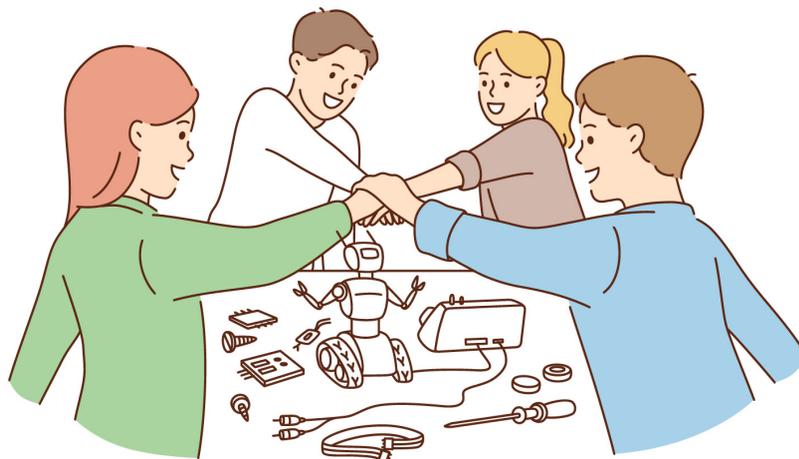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7쪽, 고 89~90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40

사례1

동아리 연간계획에 자유주제탐구활동 4차시를 계획하여 실제로 실시하고 시간 중에 학생들이 직접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우 동아리 특기사항에 '보고서(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능력을(생략)과 같이 보고서(탐구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생 산출물 보고서', '자기평가서' 등의 용어도 금지인가요?

사례2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학생 산출물의 내용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중략)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미시적, 거시적 방법으로 모색함'도 기재가 불가능한가요?

사례3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한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생활동 산출물 실적은 기재할 수 없고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탐구활동을 한 사실이나 자율탐구활동의 명칭,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재가 가능한가요?

A40

'보고서'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보고서', '탐구보고서', '자기평가서' 등의 용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율탐구활동 인정 기준(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산출물의 내용을 인용(구체적인 연구주제는 제외)한 특기사항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산출물의 실적은 기재할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실적이란 소논문을 포함한 산출물의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말합니다. 탐구활동을 한 사실, 탐구활동 명칭(구체적인 연구주제가 아닌 경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9쪽, 고 82쪽)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증빙자료 예시〉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7쪽)

표준 가이드라인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1쪽)

표준 가이드라인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8쪽)



유의사항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41

사례1

시상계획이 있는 교내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도우미로 활동한 봉사활동 실적도 입력할 수 있나요? 입력이 가능하면 '대회' 용어를 포함하여 '대회 운영 도우미'로 입력하면 되나요?

사례2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교외 봉사활동 실적 중 활동 내용에 '마라톤 대회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대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회 진행을 지원한 운영 도우미로 활동한 경우에도 대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A41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나, 대회나 행사의 진행, 보조 등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운영 도우미로만 활동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대회'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1쪽, 고 68쪽)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7쪽, 고 89~90쪽)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입력한다.

3)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Q42

동아리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자율탐구활동으로 기재 가능할까요?

A42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경우만 자율탐구활동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 외 시간에 개별로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율탐구활동으로 기재 불가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9쪽, 고 82쪽)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증빙자료 예시〉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43

사례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체육한마당, 과학축제 등을 자율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체육한마당, 과학축제 준비를 위한 도우미 활동을 계획한 경우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을 중복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2

학생회 임원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 학교 행사에서 심판 및 진행 도우미 활동을 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한가요?

A43

행사활동 도우미는 행사활동 자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이 아니므로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자율활동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인정할 수 없고 도우미 관련된 내용을 해당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우미 활동이 학생회 임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라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1쪽, 고 68쪽)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78쪽, 중 87~88쪽, 고 89~90쪽)

마.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1,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44

사례1

학교 동아리 중 방송부, 도서부 학생이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종 학교 행사시간에 실시한 활동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여 기록할 수 있나요?

사례2

국어 사랑동아리에서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운 말 사용하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말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고운 말 사용하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고 행사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이 경우 캠페인을 진행한 동아리 학생들의 활동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4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아리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아리 계획에 포함된 활동 또는 동아리 부원만 가능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8쪽, 중 88쪽, 고 90쪽)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45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전시회 꾸미기 활동을 하고 교내 봉사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봉사시간이 주어지는 시간 외에 활동한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록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라도 기록이 가능한가요?

A45

학교교육계획으로 봉사활동과 다른 영역의 활동을 각각 계획하였다면 영역에 맞게 각각 입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으로만 계획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8쪽, 중 88쪽, 고 90쪽)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1,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7쪽, 중 124쪽, 고 134쪽)

 유의사항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Q46

고 3학생의 경우 2학기 대입전형 자료 생성 시 학급회 임원 경력을 대입전형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학급회 임원(2021. 2학기 시작일.-2021.현재)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졸업일을 기준으로 미리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46

2학기 학급회 임원의 재임기간은 귀교의 2학기 시작일과 수시 대입자료 생성 기준일(2021. 2학기 시작일.-2021.08.31.)로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1.08.31.은 추후에 정시 기준일 및 졸업일로 각각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2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계획 안내(교육부 교육정보화과-3722, 2021.05.04.)

5. 자료 생성 및 제공 시기

수시: 자료생성 기준일 '21.08.31.(화)

정시: 자료생성 기준일 '21.11.30.(화)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Q47

사례1

교내에서 자율활동으로 진행한 모의 유엔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2

동아리명으로 유네스코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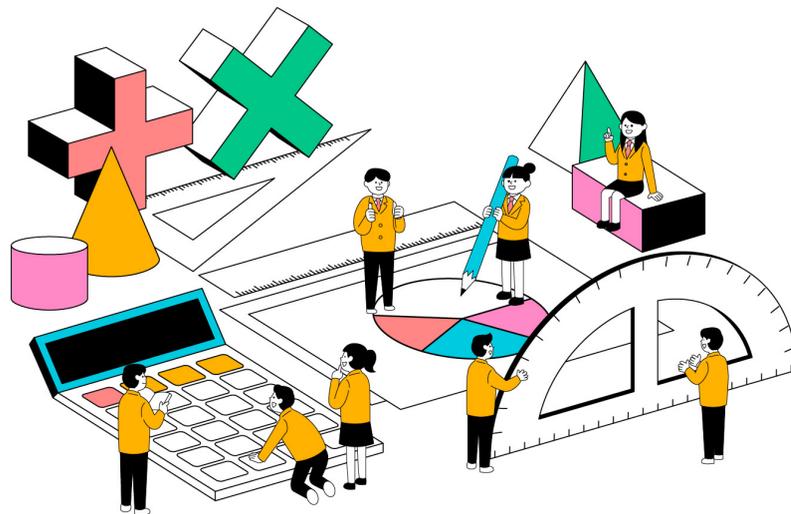
청소년단체를 정규동아리로 운영한 경우 기관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명을 동아리명으로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4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학생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명이나 직업 흥미검사 명칭을 입력해도 될까요? (예: 커리어넷, 홀랜드 검사 등)

A47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외에는 동아리명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에 기재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명이나 직업 흥미검사 명칭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상호명 또는 기관명에 해당할 경우 입력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단체를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한 경우 청소년단체명을 동아리명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이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 훈령 제348호 적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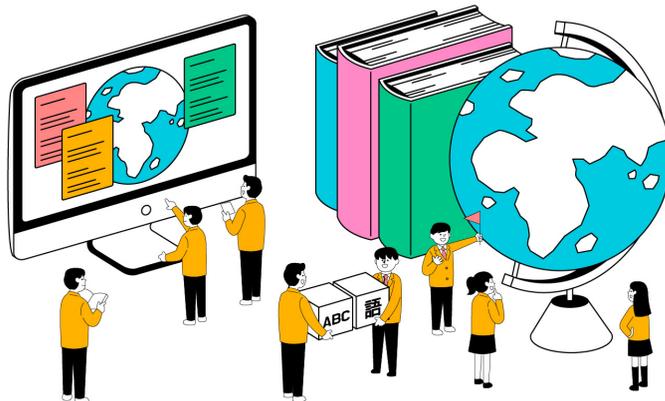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Q48

교과 수업시간에 랜드마크(예시) 파리의 에펠탑)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명칭을 입력할 수 있는지 또한,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48

랜드마크,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에 대해서는 기재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명칭에 구체적인 상호나 기관명, 고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다.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0쪽)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49

사례1

UN, EU, IMF, WHO, OECD, UNESCO 등 국제기구도 기재 불가능한 기관명인가요?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사회교과, 영어교과, 역사교과 등 다양한 교과의 교과서에 나오는 기관들이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기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독서활동상황 외 다른 영역에 기재할 때 도서명에 포함된 특수문자나 상호명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상호명, 기관명은 OO처리해야 하나요?

A49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육관련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에 한하여 구체적인 기관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2: 도서명 표기 그대로 기재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Q50

학적 변동(전출, 면제, 유예 등) 예정인 학생이 현재까지 장기결석(또는 결과)으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을 단 1회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특기사항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A50

'장기결석(또는 결과)으로 특기사항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7쪽)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나.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세 교과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하며, 특정 교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8쪽)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1)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다)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기사항 없음.
 -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기사항 없음.
 -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기사항 없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3쪽)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기사항 없음.
 -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기사항 없음.
 -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기사항 없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51

본교 정규 수학 동아리에서 방과 후에 전교생 대상 수학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활동 내용을 수학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능할까요?

A51

정규 교과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진행된 활동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한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타 초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2쪽, 고 84쪽)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유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유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8쪽, 고 123쪽)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 및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과목별로 한 줄씩 띄어 등록됨.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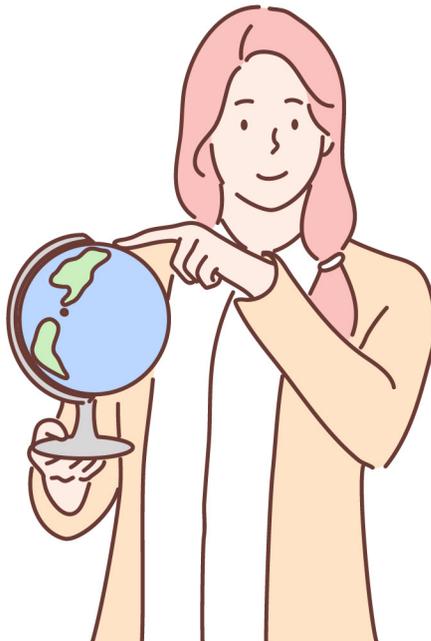
Q52

원격수업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또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제출받은 과제물을 근거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나요?

※ 체육, 예술교과목이 아님

A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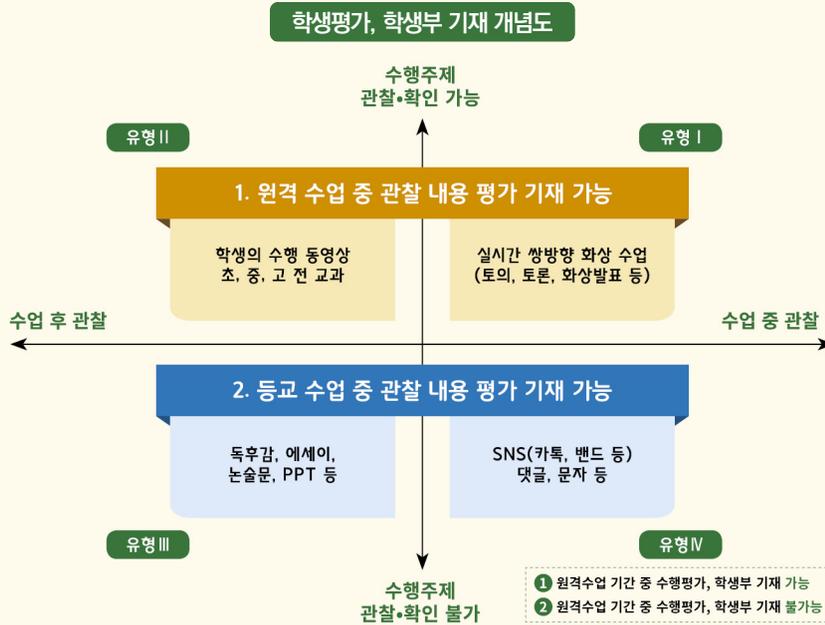
실시간 쌍방향인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의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활용해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학년도 2학기 이후)(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7451, 2021.11.18.)



-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유형 I),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 II)으로 평가·기재 가능
-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활동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평가·기재 가능(유형 III, IV)
 - ※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학생 활동은 평가·기재할 수 없음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예시]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시 실시한 토의·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사항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등교수업에서 '비평의 기법'에 대해 지도하고,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확인한 이해도,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Q53

2학기 중간에 본교로 전입 온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전출교 일부 과목만 기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본교에서 전출교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53

전출교와 동일한(또는 유사한) 과목에 대한 내용 반영 여부와 반영 범위는 교과 협의회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4조(처리요령)

⑤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54

성적 미산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본교 평가 시행일에 출석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출석했습니다. 평가시행일의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54

특별한 사유 없이 미응시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합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성적 산출 시 인정점 처리 등은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단,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원격수업의 경우, 미응시하면 '질병' 결석 처리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4쪽, 고 111~112쪽)

파)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기]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기](중 169쪽, 고 181쪽)

〈출결상황〉

- 위탁교(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함

〈성적 지필평가/수행평가〉

-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Q55

교과 시간에 교과 관련 독서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이때 독서활동상황 이외의 영역에 도서명을 입력할 때 도서명만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독서활동상황에 입력하는 형식처럼 '도서명(저자)'와 같이 저자명을 함께 입력해야 하나요?

A55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이 단순독후활동이 아니라면 '도서명' 또는 '도서명(저자)'와 같이 도서명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3쪽)

유의사항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0쪽, 고 130쪽)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30쪽)

유의사항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Q56

동일 과목으로 한 학년도에 걸쳐 있는 교과외의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기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A56

동일 과목에 대해 학기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종합적으로 특정 학기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별 구분하여 기재할 땐 (1학기), (2학기)가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8쪽, 고 123쪽)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 및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Q57

정규 수업시간에 도움반(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이 1년 동안 일반 교과수업에 한 시간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교과(군)에 대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A57

고등학교의 경우라면 모든 교과(군)에 대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은 도움반 담당교사에게 전달받아 관련 교과에서 기재하도록 하며, 관련 교과가 없거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순회교육으로 특기사항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7494호)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4조(처리요령)

-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 기타

- 마.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8쪽)

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Ⅱ

- 1)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Ⅱ'는 전문교과Ⅱ의 성적처리 유형 및 평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2021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21.02.01.)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평가조정 지원 강화, 대안평가 방안 마련으로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평가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등을 명시한다.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9690(2020.12.23.))

위탁, 장기결석 등으로 특정 교과 또는 창체 영역의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의 기재 방법을 준수하되,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3쪽)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Q58

사례1

영어 교과의 단원명, 교육활동 주제, 내용 등은 영문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나요?

사례2

생활중국어 과목의 경우 한자의 사용이 많고 한자 표기도 많은데,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년 교양과목의 특기사항에 한자표기를 할 수 있을까요?

A58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원명, 활동 주제, 특정 단어 등의 외국어 표기보다는 학생의 교과 관련 역량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4조(처리요령)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거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59

1학기 후반에 재취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재취학한 시점에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과 진로탐색활동은 종료된 상태이고 예술체육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주제선택 활동 및 진로탐색활동'을 배정해야 하나요? 배정한다면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59

자유학기활동이 종료된 이후 재취학한 경우에도 자유학기 활동을 배정하고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전입교의 자유학기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 전입 온 학생의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2021.00.00. 재취학으로 자유학기 활동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8쪽)

⑧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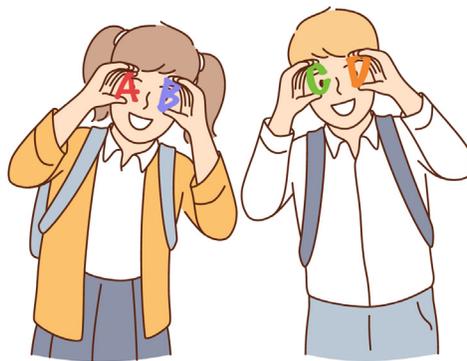
가.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전출 시 자유학기활동에 전출일까지의 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한다.
- 2) 자유학기의 자유학기활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전출교-자유학기 미시행, 전입교-자유학기 시행]

- ① 전입교에서는 전입일 이후 학생이 이수한 자유학기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② 전입교의 자유학기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 전입 온 학생은 '특기사항' 란에 미이수 사유를 입력한다.
※ 해당학생에 대해 자유학기활동 영역을 등록하고 활동내용(프로그램)을 배정하여 입력함.
<예시> 2021.12.16. 전입학으로 인해 자유학기 활동내용이 없음.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Q60

사례1

1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이 미편성되었고,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은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출생 학교생활기록부 전송 시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해야 하나요?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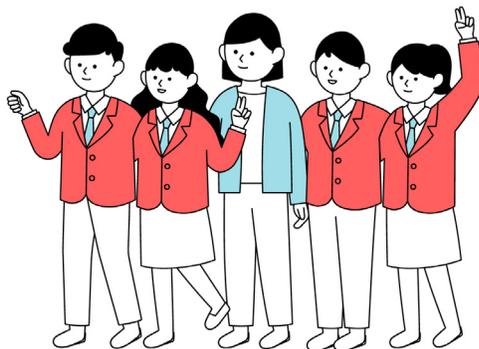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담임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영역이 편성되어 있다면 학생의 진로특성을 자유학기의 진로탐색 영역에 입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공란을 비워두어도 될까요?

사례3

교육청 주최주관 활동 내용을 진로활동에 적어주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2,3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 기재하면 되는데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학기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면 될까요?

A60

2020학년도에는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두 학기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유학기활동상황'에 '진로탐색활동'이 편성된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한 사항을 '자유학기활동상황'란에 입력하였으나, 2021학년도에는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전출을 할 경우에는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 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차. 전출입 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2쪽)

③ 특기사항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7쪽)

④ 진로탐색활동

가. 자유학기의 진로탐색활동 특기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자유학기(진로탐색)]-[진로탐색활동별기록]에 입력한다.

나. 진로탐색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1)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한 진로교육 활동명과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2)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한 경우 관련 교과 및 수업 내용 그리고 학생의 활동 과정과 결과,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한다.
- 3)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진로체험활동 활동명과 시간, 학생이 수행한 활동 과정과 결과, 활동 참여도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한다.
- 4)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중 실시한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수정 알림(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382(2020.7.22.))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 두 학기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유학기활동상황에 '진로탐색활동'이 편성된 경우에는 '자유학기활동상황'란에 입력함

영역	1학기	2학기	기재 사항
창·체 '진로활동'	×	×	'공란'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	○	진로희망분야, 진로특성사항 기재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독서활동상황(중·고)



Q61

전자도서관 책(전자책 또는 오디오북)을 듣고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독서활동상황'에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61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ISBN에 등재되어 있고, 학생이 관련 증빙자료(독서기록장 등)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쪽, 고 129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62

독서활동상황에 '시리즈 도서'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A62

ISBN에 등재된 시리즈 도서일 경우에는 증빙자료(독서기록장, 독서포트폴리오 등)를 근거로, '도서명(저자명) 1~00권' 또는 '도서명1(저자명), 도서명2(저자명)...'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120쪽, 고 129~130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2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독서활동상황(중·고)



Q63

독서활동상황에서 학생이 '2021년 □□ 수상작품집'에서 A작가의 작품 「□□□」만 읽었으나, 이 작품은 단독 단행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처럼 학생이 전체 작품을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된 단편 소설만을 읽었을 경우, 도서명이 아닌 '작품명(저자)' 형식으로 기재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63

ISBN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명(저자)'은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BN에 등재된 도서를 읽고 제출한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120쪽, 고 129~130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②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 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64

사례1

학생이 영어 원서로 된 책을 읽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문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학생이 영어 원서를 읽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어 원서명(저자명)으로 입력할 수 있을까요?

사례2

도서명에 포함된 특수문자, 기관명, 상호명은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A64

학생부는 한글 기재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도서명과 저자명 등) 영문 기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명과 저자명은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서가 ISBN에 등재된 도서이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학생이 읽은 도서의 제목과 저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쪽, 고 129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0쪽, 고 130쪽)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 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공통)



Q6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자율동아리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 입력할 수 있을까요?

A6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동아리활동란에 자율동아리의 동아리명, 필요 시 간단한 동아리 소개는 입력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3쪽, 중 82쪽, 고 85쪽)

(초) ② 특기사항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중·고) ③ 특기사항

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4쪽, 고 87쪽)

(초) 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설명)만 기재한다.

※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는 30자 이내(공백포함)로 입력 가능함.

(중·고) 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66

사례1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해야 하는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다른 영역의 내용을 중복 기재해도 되나요?

사례2

임원 사실을 자율에 기재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중복 기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날짜 병기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A6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입력한 자료로써 다른 항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의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재임기간의 병기는 필수 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4쪽, 중 83쪽, 고 86쪽)

(초) ③ 자율활동, (중·고) ④ 자율활동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안에 병기한다.

<예시> 1학년: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1.03.02.-2021.08.16.)

<예시> 3학년: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2021.03.01.-2022.02.10.)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4쪽, 중 121쪽, 고 131쪽)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공통)



Q67

장기결석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0인 학생이 휴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창의적 체험활동란의 입력 예시로 “장기결석으로 인해 관찰내용 없음”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해서는 해당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창의적 체험활동란과 동일하게 “장기결석으로 관찰 내용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67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나 출석일수가 0일인 학생으로 모든 항목의 입력 자료가 없는 경우(교사의 관찰·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장기결석으로 관찰 내용 없음’과 같이 입력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30쪽)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1쪽, 고 131쪽)

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입력함.

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68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정정사유에 '부당정정으로 인한 복원'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사례2

중복기간 자료 삭제 정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오류내용과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68

정정대장의 정정사유를 '부당정정으로 인한 복원'으로 기재 가능 여부는 이전의 자료 정정이 부당한 정정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재 여부를 조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중복학년 자료 삭제에 대한 정정대장 내용 작성 방법은 기재요령의 정정대장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19조(자료의 정정)

-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정정사항(공통)



Q69

사례1

전출교에서 송부한 전입생의 학생부를 검토해보니 이전 학년도에 비문, 오타 등으로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출교에 정정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서 정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아직 학적반영 전이므로 전출교에서 정정해서 보내줘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전출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정 사항이 발견되어 전입교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교(전출교)에서 동일한 정정 사항을 확인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였는데, 본교(전출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전입교에 전송해도 문제는 없는가요?

A69

전출교는 학생부의 내용을 철저히 대조·확인 작업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지만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학적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출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전송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은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19조(자료의 정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처리 해야 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고 30쪽)

차. 전출입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 전출 당일 모든 자료의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학적 자료만 전출 당일 전송하고 나머지 자료는 전입교와 협의를 통해 추후 전송 가능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1쪽, 중 32쪽, 고 31쪽)

📌 유의사항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 가. 당해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정정사항(공통)



Q70

전출생의 이전학년도 동아리 특기사항이 누락되어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해당 학년도 누가기록이라도 찾아서 보내면 정정할 수 있을까요?

A70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의 누가기록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아울러, 학생부 입력 자료에 대하여 전입교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공문을 통해 전입교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71

이전년도 자율동아리 입력 시, 자율동아리 소개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정대장을 통하여 자율동아리 소개를 입력가능한가요?

A71

자율동아리는 동아리명만 입력하며, 자율동아리 소개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오류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4쪽, 고 87쪽)

(초) 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설명)만 기재한다.

※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는 30자 이내(공백포함)로 입력 가능함.

(중·고) 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예시〉 (위드유: 자율동아리)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동아리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정사항(공통)



Q72

사례1

현재 고3 재학생의 2019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학생이 하지 않은 활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하지 않은 활동이 기재된 경우, 정정을 통해 삭제할 수 있을까요?

사례2

수상과 관련된 내용은 수상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년도 학교생활기록에 수상과 관련한 내용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기재요령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72

사례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당해학년도 이전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학생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존재할 경우 정정을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사례 2: 해당 활동이 수상계획을 포함한 교내대회와 관련한 것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5쪽, 중 92쪽, 고 85쪽)

②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③ 특기사항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1쪽, 고 142쪽)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73

2020년 교육청 주최주관 프로그램 내용이 글자수 부족으로 누락 되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띄어쓰기를 모두 붙인 후 추가 입력하여 정정이 가능한가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하다고 교육청 공문에 기재되어 있음.)

A73

글자 수 부족을 이유로 해당학년의 평가가 종료되어 입력이 완료된 활동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입력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19조(자료의 정정)

-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9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 가. 당해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정사항(공통)



Q74

3학년 진급 후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2학년 때 학급회 반장으로 수행했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급회 반장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시 입력할 방법은 없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여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7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고 훈령과 지침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급회 반장 활동 내용'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활동 관련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에 기재 가능하며, 입력 가능한 글자수가 남아있어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4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7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5호에 해당하여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하였는데, 해당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언제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내년에 재입학을 하게 된다면 조치사항 삭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7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경우는 졸업 직전 2월에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삭제하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학생의 입학년도가 아니라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삭제 시기를 결정하며, 졸업 이후 조치사항 삭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44쪽, 중 170쪽, 고 182쪽)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별 기재 영역 삭제 시기의 <표>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삭제 시기'는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145쪽, 중 171쪽, 고 183쪽)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8호)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호·제5호·제6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정정사항(공통)



Q76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 동일 항목의 동일 사유로 정정할 건이 여러 건일 경우 1건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마다 정정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76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항목의 동일 사유로 정정할 시, 여러 건이라도 정정을 1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해 동일 사유로 정정할 경우 정정대장 작성은 {학생부 정정대장 등록}을 통해 해당 학생 모두를 일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정정대장은 각 개별 학생별로 생성되어지고, 정정처리 과정도 각 개별 학생별로 진행됨으로 각 개별 학생 수만큼의 정정 건수로 처리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5~106쪽, 중 132~133쪽, 고 143~144쪽)

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 사항의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류내용에는 정정 전의 내용을, 정정내용에는 정정 후의 내용을 입력하되, 기재예시에 준하여 입력함.

○ 정정 항목: 교육정보시스템 [학생부]-[정정대장작성]-[등록/학생부 정정대장 등록]

학생부 정정대장 등록

개별등록			일괄등록			1학년 7자일반 1반 3번 안정선우주정복			저장	닫기
<input type="checkbox"/>	번호	성명	정정항목	심의일자	정정일자	정정일자는 결재완료일로 입력됩니다.				
<input type="checkbox"/>	1	새출발		항목	<input type="checkbox"/> 학년이력	<input type="checkbox"/> 전공과정	<input type="checkbox"/> 인적사항			
<input type="checkbox"/>	2	김갑산			<input type="checkbox"/> 누가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출결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안정선우주정복			<input type="checkbox"/> 수상경력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인증	<input type="checkbox"/> 진로희망사항			
					<input type="checkbox"/> 창의적체험활동	<input type="checkbox"/> 봉사활동실적	<input type="checkbox"/> 교과학습발달상황			
					<input type="checkbox"/> 세부능력/특기사항	<input type="checkbox"/> 독서활동상황	<input type="checkbox"/> 행동특성/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국가직무능력표준이수상황					
					※ 2009개정교육과정 이전자료					
					<input type="checkbox"/> 창의적재량활동	<input type="checkbox"/> 특별활동	<input type="checkbox"/> 교외체험학습상황			
					<input type="checkbox"/> 과년도성적(1995년이전성적)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공개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미공개사유				선택						
비고										

기타사항 등(공통)



Q77

운동부 재학생이 선수등록을 위한 자료로 “학생부(II)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77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민원] 메뉴를 통해 학생부를 발급할 경우 당해 학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미제공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31쪽, 중 31쪽)

타. 재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유예, 면제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31쪽)

타.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 중, 고)’를 활용함.

※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기타사항 등(공통)



Q78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명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A78

교육관련기관(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을 제외한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UN, WTO 등'의 국제기구도 입력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명이 아닌 교육활동 중 드러난 학생의 특기사항을 위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Q79

행정심판 소송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8호(전학)에서 3호(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79

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입력하고, 향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조치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되, 조치사항만 수정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0쪽, 중 41쪽, 고 39쪽)

다.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1)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 2)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는 변경하지 않음.





기타사항 등(공통)



Q80

교차 점검 시 담임 이외 교사가 학생부를 점검해도 되나요?

A8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실태 점검)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은 당해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대조·확인 방법으로 교차 점검자를 담임교사 이외 교사를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5쪽, 중 132쪽, 고 143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와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은 당해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

○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교육부, 2021.2.)(초등학교편 123쪽, 중·고등학교편 119쪽)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Q81

본교는 2월 11일 졸업식을 했는데 위탁기관은 2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본교 졸업식 이후에도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8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정이 2월 말까지 운영되어 위탁학생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는 비록 원적교에서 졸업식을 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입력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및 '졸업' 학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 or 관련 근거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8쪽, 중 70쪽, 고 67쪽)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01
인적학적사항
(공통)

02
출결상황
(공통)

03
수상경력
(중·고)

0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

0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0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0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

08
독서
활동상황
(중·고)

0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공통)



(ㄱ)		(ㄴ)	
개인정보보호	17	면제	6, 10, 60
객관적 증빙자료	82	민원	91
검정고시	8	(ㄷ)	
검정고시 합격	14	방송부	53
결정일자	93	보고서	48
공로상	21	봉사시간	39
관광지	58	봉사활동	29, 39, 42, 50, 52
관찰	62	(ㄹ)	
교과교육연구회	45	날짜 병기	79
교과세특	66, 68	날짜 입력	43
교외상	21	누가기록	44, 84
구분	29	누락	84, 88
국제기구	59, 92	(ㄷ)	
글자수	87	단기결석	16
기관명	31, 56, 59, 92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	66
		담임 이력	9
		대입전형 자료	55
		대학명	31
		대회	23, 50, 52
		도서명	66
		도서부	53
		도움반	68
		독서활동	66, 74, 75, 76
		동아리	51, 53, 61
		등교수업	62
		등위	22, 23
		(ㄹ)	
		영문	70
		오류내용	81
		외국어	70
		원격수업	62
		원서	77
		위탁학생	95
		유예	10, 60
		이수시간	41
		인정점	65
		임원 재임기간	34, 36
		(ㄷ)	
		자격증	28
		자유학기	71
		자율동아리	78, 85
		자율탐구활동	48, 51
		자율활동	30, 42, 44, 52
		자퇴	10
		장기결석	18, 60, 80

색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31	한자	70
재취학	6, 8, 7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0
저자명	66	행정심판	93
전입생	82	헌혈	29
전출생	84		
정정내용	81		
정정대장	82		
정정사유	81		
졸업식	13		
종업식	13		
주관 기관명	29		
주민등록번호	11		
중국어	70		
중복 기재	52, 79		
중학교 졸업	14		
직업명	40		
진로활동	30		
(ㄹ)			
창의적 체험활동	95		
체험캠프	33		
체험활동	61		
출석일수	19		
(ㄴ)			
커리어넷	56		
콘텐츠 활용	62		
(ㄷ)			
탐구보고서	48		
특기사항	41, 44		
특수문자	77		
(ㄹ)			
학교폭력	89		
학년 배정	6		
학생회 임원	55		

● 기획

이지현(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
김도영(교육부 교육연구관)
김성동(교육부 교육연구사)
허혜정(교육부 교육연구사)
박시연(교육부 주무관)

서지연(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교육지원팀장)
박건희(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
장익제(한국과학창의재단 전문연구원)

● 집필진

송준현(광주 하남초)
이향훈(경기 과천시)
정준형(울산 강남초)

김민경(서울 선화예중)
이석재(충북 가덕중)
이준영(부산 동수영중)

곽연호(부산 동천고)
박희진(경남 마산고)
이종혁(서울 남강고)
한승민(경북 경주여고)

● 검토진

박소영(부산 과학고)

안정선(전북 칠보고)

정진구(강원 미로중)

2021 학교생활기록부 질의·회신사례집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소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빌딩) 8층 미래교육지원팀

편집·인쇄 | 화신문화사
전화 : 02) 2277-0624(대표) FAX : 02) 2278-11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59-6

자료탐재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 이 사례집은 2021년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의·회신 대표사례 확산을 통해 학생부 정책 이해도 향상 및 학생부 기재역량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